

코람코퍼스텝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1호 변경내역서

- 아 래 -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제 5 조	제 5 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 5 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 년 11 월 12 일까지로 한다. 단, 투자신탁기간이 2018 년 11 월 12 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로 한다.<본 항 개정 2015.12.17>
제 18 조 2	제 18 조의 2(운용 및 투자제한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제 18 조의 2(운용 및 투자제한) ① (좌동) 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본 항 개정 2015.12.17>
제 37 조	제 37 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제 37 조(신탁계약의 변경)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체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<본 항 개정 2015.12.17>